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청 원 서

일본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대만,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여성들을 동원하거나 납치해 성적 학대를 가한 행위를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등 반인륜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책임을 외면한 채, 역사 왜곡 행위와 현재 생존해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독하는 발언을 하는 데 대해 강력한 우려와 함께 깊은 분노를 표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국 전체에 대한 인권유린행위로 이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유엔은 지난 2005년 11월 1일 나치 독일에 의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해된 유대인 등을 기억하기 위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소련군에 의해 해방된 1945년 1월 27일을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으며,

2012년 12월 타이완에서 열린 제11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매년 8월 14일을 “세계 위안부의 날”로 정하기로 하였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세계 여성인권단체들은 매년 8월 14일에 다양한 캠페인과 연대집회를 추진하며 유엔, 일본정부 등에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연대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다.

이상의 내용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청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 등을 통해 우리나라와 일본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권리회복 등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나라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중심으로 일본 대사관 앞에서 1992년 1월 8일부터 매주 수요일 집회를 2천여 회 넘게 실시하는 등 일본정부의 근본적이고 책임 있는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연대활동과 더불어 국내법 차원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지원을 비롯한 기념사업 등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여 일본정부의 진정된 사죄와 법적배상을 촉구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특별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을 할 것을 요구한다.

-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전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를 둔다.
-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에 장래비 및 추모시설 설치비용을 추가 지원한다.
-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사료관 건립, 교육자료 발간, 피해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연구 등에 지원한다.
-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립일 및 기립주간”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규탄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피해자 기립일로 한다.
- 5. “국회에 대한 보고” 정부는 전년도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활동,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년 3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